

의안번호	2217522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6.3.27.
추계번호	26E1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등이 받은 폐업지원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수령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689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135억원 (연평균 227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비과세 (안 제104조의37)	-689	-111	-111	-111	-111	-1,135	-227

※ 본 추계결과는 어업자의 감척 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수변화를 추계한 결과로, 어업자별 실제 종합소득금액, 공제 내역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04조의3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어선어구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 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 추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4조의3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2026년 중 시행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¹⁾
 - 2019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가정²⁾
 - 감척 대상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지만, 2024~2025년 감척 지원금(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대부분 개인인 것을 반영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19~2025년 폐업지원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는 2026년에 발생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 발생(징수 기준)하는 것으로 가정
- 연근해어선 감척에 참여한 어업자의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1)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국세채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연간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감척건 수 및 감척 지원금 지급액(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어업자의 연도별 평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평균 기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산출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 이후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개인별 소득 규모, 소득 원천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연도별 감척지원금 평균 수령액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³⁾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연근해 어선 감척 현황

- 2019~2025년 동안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감척건 수는 1,823건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7,198억원 규모임
 - 2019~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는 434척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5,872억원 규모임
 - 2019~2025년 연안어선 감척 수는 1,389척으로, 이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은 1,326억원 규모임

3) 법정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음

[표 2] 어선·어구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척, 백만원)

업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근해어선 감척 수	13	53	86	67	65	86	64	434
폐업지원금	4,423	21,959	58,009	58,403	46,163	82,980	58,848	330,785
매입지원금	7,632	30,458	42,212	30,694	40,058	60,568	44,813	256,435
합계	12,055	52,417	100,221	89,097	86,221	143,548	103,661	587,220
연안어선 감척 수	360	176	109	117	207	188	232	1,389
폐업지원금	14,771	7,699	5,585	10,379	16,294	13,141	20,326	88,195
매입지원금	5,567	4,139	3,096	4,284	6,906	8,463	11,948	44,403
합계	20,338	11,838	8,681	14,663	23,200	21,604	32,274	132,598
근해어선·연안어선 감척 수	373	229	195	184	272	274	296	1,823
폐업지원금	19,194	29,658	63,594	68,782	62,457	96,121	79,174	418,980
매입지원금	13,199	34,597	45,308	34,978	46,964	69,031	56,761	300,838
합계	32,393	64,255	108,902	103,760	109,421	165,152	135,935	719,818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2) 추계 방법

□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건 수,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액(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활용

- 어업자 등이 수령한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⁴⁾하므로, 필요경비(60%)⁵⁾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어업자별 감척지원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과세대상소득(사업소득 등)의 유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타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상황

□ 자료의 한계로 다른 과세대상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어업자의 감척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

- 매입지원금(어선 잔존가치 평가액) 수령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폐업지원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함에 따라, 전체 감척 지원금(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수령액 전체에 대한 소득세 추정 후, 과세 대상인 매입지원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추정액을 차감하여 폐업지원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추정
 -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 (매입 지원금 +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 매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 연도별로 연안어선, 근해어선을 감척한 어업자가 수령한 평균 감척 지원금 수령액을 바탕으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도별 평균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
 -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각각 150만원)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알 수 없어 표준세액공제(7만원) 적용
 -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연도별 감척건수 및 감척지원금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어업자의 평균 기타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

4)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호의2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표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여 평균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
- 기타소득금액은 감척 지원금 수령액에서 필요경비(감척지원금 수령액의 60%)⁶⁾를
차감하여 산출

- 어업자의 평균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치에 어업자 수(감척건수)를 곱하여
귀속연도별 감척 지원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추정
-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추정한 후,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폐업지원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추정

6) 2018년 감척지원금 수령액의 경우 수령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2019년 이후 수령액에 대해
서는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

[표 3] 어선·어구 감척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

(단위: 척,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근해어선 감척 수 (A)	13	53	86	67	65	86	64	434
건당 매입·폐업지원금 합계액	927	989	1,165	1,330	1,326	1,669	1,620	—
건당 소득세 추정액 (B)	122	132	160	187	186	243	235	—
전체 소득세 추정액 (C=B×A)	1,583	6,977	13,747	12,512	12,063	20,911	15,030	82,821
매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액 ¹⁾ (D)	893	3,541	4,649	3,289	4,714	7,387	5,458	29,931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E=C-D)	690	3,436	9,098	9,223	7,349	13,523	9,572	52,890
연안어선 감척 수 (F)	360	176	109	117	207	188	232	1,389
건당 매입·폐업지원금 합계액	56	67	80	125	112	115	139	—
건당 소득세 추정액 (G)	1.9	2.5	3.2	6.1	4.9	5.1	6.8	—
전체 소득세 추정액 (H=G×F)	667	440	353	712	1,024	962	1,579	5,736
매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액 ¹⁾ (I)	66	66	54	81	114	173	304	859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J=H-I)	601	373	299	631	910	788	1,275	4,877
근해어선·연안어선 감척 수 (A+F)	373	229	195	184	272	274	296	1,823
전체 소득세 추정액 (C+H)	2,250	7,416	14,100	13,223	13,086	21,872	16,608	88,557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세수효과 (E+J)	1,291	3,809	9,397	9,854	8,258	14,312	10,847	57,767

주: 1) 전체 감척지원금(매입지원금+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도별로 전체 매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추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 등이 2019~2025년 기간 동안 수령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약 57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이후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감척 수 및 감척지원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5년 이후에는 최근 3년(2023~2025) 평균 세수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2031년 5년간 1,1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7년은 2019~2025년 및 2026년 지급된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
 - 2026년부터는 최근 3년(2023~2025) 평균 세수효과(111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비과세 (안 제104조의37)	-689	-111	-111	-111	-111	-1,135	-227

※ 본 추계결과는 어업자의 감척 지원금 수령액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수변화를 추계한 결과로, 어업자별 실제 종합소득금액, 공제내역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